

■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별표 3] <개정 2025. 12. 23.>

일반군무원의 계급별 기준 및 군인 계급과의 대비 기준(제4조 관련)

일반군무원의 계급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징계권자를 정할 때 군인 계급과의 대비
일반군무원 (전문군무경력관, 전문임기제 군무원 및 한시임기제군무원은 제외한다)	전문군무 경력관	전문임기제 군무원	한시임기제 군무원	
1급	가군	가급		소장
2급				준장
3급				대령
4급				중령
5급				대위
6급	나군	다급	6호	
7급		라급	7호	
8급	다군	마급	8호	부사관
9급			9호	